

# 「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6일 김성기 의원이 발의하고, 2023년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### 1. 제안이유

평창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군수의 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(안 제3조)

나.. 해설사 직무(안 제4조)

다.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준수하여 ‘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’ 설치(안 제5조)

라. 해설사 교육 및 활동비 지원 등(안 제6조 ~ 제7조)

마. 해설사 포상(안 제8조)

### 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평창군의 문화·관광자원 안내 및 해설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 
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것으로,

「관광진흥법」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던  
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 
상위 법령을 중복되는 내용 없이 간결하게 준용하여  
우리 군 지역 실정에 걸맞게 규정하였습니다.

○ 검토결과,

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※ 관련 입법례: 전국 98개 지자체, 도 내 6개 시·군  
(고성군, 동해시, 속초시, 양양군, 영월군, 태백시)